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전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9.

복지문화 위원회
전 문 위 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9.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달서구청장(보건행정과장)
- 발의일자: 2024. 9. 12.(목)
- 회부일자: 2024. 9. 12.(목)
- 검토기간: 2024. 9. 12.(목) ~ 9. 20.(금)

2. 개정이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른 지자체 조례 위임 사항에 의해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금액 명시

3. 주요내용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금액(3,000원) 명시[별표2]
- 인용 법률명 정비(안 제4조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8호)

4.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변경된 법률의 제명을 반영하고, 제명의 오기를 **정정하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의 변경사항과 오기된 부분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023년 11월 22일 일괄개정된 총리령 제1916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에 따르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 사항은 2024년 11월 23일 이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 이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지 2 수수료 변경 사항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시행일 이후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시행일과 관련된 부칙을 수정할 필요¹⁾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수정의견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를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일은 제2차 정례회는 2024년 10월 2일이므로 의결된 조례안은 10월 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되어야 하고, 10월 27일까지 공포하여야 함으로 상위법령의 시행일인 11월 23일까지는 약 1개월간 상위법령 없이 조례를 제정·시행한 것이 되므로 시행일을 조정하여야 함.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2023. 11. 22.>

[시행일: 2024. 11. 23.]

□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⑦ <생략>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